
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(안)

기획조정실장 : 허정식 ☎3410-7011 경영관리부장 : 강호동 ☎7074 담당 : 이형석 ☎7078

법무처장 : 박홍주 ☎3410-7913 송무부장 : 강기연 ☎7920 담당 : 고은진 ☎7922

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 ('26.01.05.)사항, 임원 문책에 관한 사항 및 직제개편 사항을 공사 정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그 내용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함

I 관련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제21조(사업), 제30조(손익금의 처리) 개정(시행 2026. 1. 5.)

제21조(사업)

-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토지의 취득·개발·비축·공급(분양 또는 임대)·운영 및 관리
 - 토지 및 도시의 개발·정비·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- 주택건설용지, 산업시설용지, 공공시설용지 등의 개발사업
 - 도시개발사업, 도시계획시설사업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, 재정비촉진사업
 - 역세권 개발사업 및 부동산 개발업
 - 빈집정비사업, 소규모주택정비사업
 - 도시재생사업, 상권활성화사업, 시장정비사업
 - 주거·산업·교육·연구·문화·관광·휴양·행정·정보통신·복지·물류 등(이하 이 목에서 "주거등"이라 한다)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·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
 - 주택(복리시설을 포함한다) 및 건축물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- 주택 및 건축물의 건설·개량·매입·비축·공급(분양 또는 임대)·운영 및 관리
 - 주민 재정착 및 창업지원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·개량·매입·공급(분양 또는 임대)·운영 및 관리
 -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주거복지사업
 -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
 - 주차장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·운영 및 관리
 - 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관광사업의 개발·조성·운영 및 관리
 - 도심항공교통(UAM)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
 - 방송통신시설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

7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
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

9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(설계·감리 등) 및 업무(조사·연구·시험·기술개발 등)

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.

③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30조(손익금의 처리)

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.
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
2. 이익준비금의 적립

3. 감채적립금의 적립

4. 「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주택진흥기금에 납입

5.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

○ 「지방공기업법」

제63조의6(징계 요구 등)

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.

② ~ ③ (생략)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○ 「상법」

제391조의3(이사회 의사록)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○ 공사 자체감사 ‘기획경영본부 종합감사 처분 요구’

「기획경영본부 종합감사」 처분요구(2024. 7. 9.)

「임원인사규정」 상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필요시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하나, 현재 「정관」이나 「이사회 운영규정」 등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「이사회운영규정」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함

○ 공사 「직제규정」

제3조(직제의 개편)

공사의 직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개편한다.

II

추진경위

- '25. 3. 26. : 제411회 이사회 의결(원안가결)
 - 의결사항 : 정관 제24조(의결사항), 제28조(의결방법), 제29조(의사록 작성) 개정
- '26. 1. 22. : 제423회 이사회 의결(원안가결)
 - 의결사항 : 정관 제6조(사업의 범위), 제33조(손익금의 처리) 개정
- '26. 3. 3. : 제425회 이사회 의결(원안가결)
 - 의결사항 : 정관 제22조(조직 및 정원), 별표1(기구표), 별표2(정원표) 개정

III

주요 개정내용

- **조례 개정사항을 공사 정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 유지**
 - 제6조(사업의 범위) 전면 개정
 - (현행)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열거(제1호~제23호)
 - (개정) 사업유형에 따라 세부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(제1호~제9호), 사업의 범위에 신규사업 추가(노인복지시설사업, 민간투자사업, 체육 시설사업, 관광사업, 도심항공교통 기반 조성사업, 방송통신시설사업)
 - 제33조(손익금의 처리) 제1항 제4호 개정
 - (현행) 이익배당(시 일반회계에 납입)
 - (개정) 「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주택진흥기금에 납입
- **임원 문책에 관한 사항 반영 등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정비**
 - 제24조(의결사항) 제21호 신설
 -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'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' 추가
 - 제28조(의결방법) 제1항 개정
 - 임원의 문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임원인사규정」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

- 제29조(의사록 작성) 제목 외 부분 개정
 - (현행)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 기명날인
 - (개정) 출석한 이사 및 감사 기명날인 또는 서명

□ **직제개편을 위한 조직 및 정원 관련 규정 개정**

○ 직제개편의 필요성

- 저출생 대응 공공주택 공급 및 촘촘한 주거복지를 위한 역량 결집
- 미래서울 도시경쟁력 강화 적극 추진
- 정비사업 신속 추진 및 지원 확대
- 지속성장 조직기반 확립 위한 효율적 조직설계

○ 기구 개편

- (기구 변화 골자) 실·처 단위 증감 없음
 - (현행) 사장, 감사, 7본부, 5실, 1원, 31처, 1단
 - (변경) 사장, 감사, 7본부, 6실, 1원, 30처, 1단
 - ※ 1실·5처 신설/ 1실 정규조직화/ 1실·6처 통폐합
- (명칭 및 직제순 변경) SH 정체성을 반영한 본부 명칭 부여 및 SH 본연의 기능으로서 건설 및 개발사업 강조
 - (현행) 전략사업본부, 건설사업본부, 도시정비본부, 도시개발본부
 - (변경) 건설사업본부, 개발사업본부, 정비사업본부, 도시활성화본부

○ 정원 조정

- (총정원 변화) 1,386명 → 1,402명 (+16명)

구분	총정원	임원	직 원										
			계	사무직·기술직			주거복지직			전문직			
	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	소계	사무원	기술원	소계	부문별	연구원
현행	1,386	5	1,381	902	20	69	813	421	240	181	58	40	18
개정(안)	1,402	5	1,397	915	20	69	826	424	242	182	58	40	18
증감	16	-	16	13	-	-	13	3	2	1	-	-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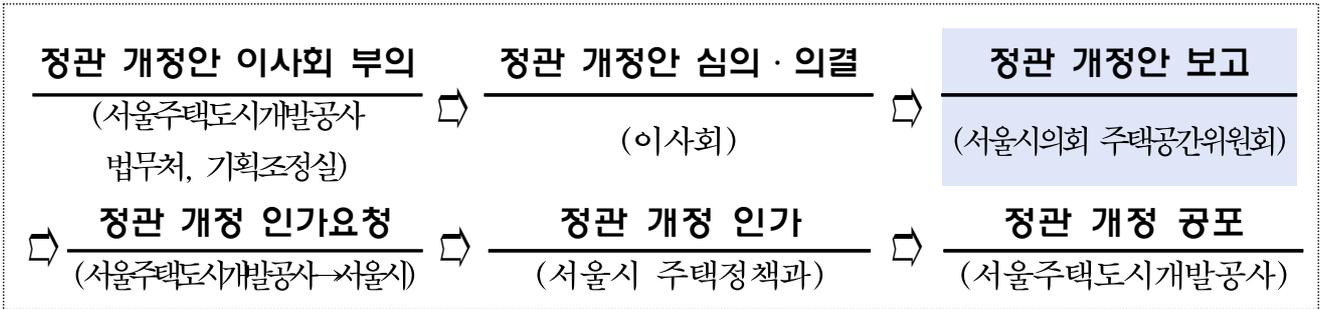
- 임대주택 관리강화, 신규 개발사업 추진,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, 공공재개발·공공재건축, 노후주택 품질개선사업,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, 모아타운 사업 확대 등으로 16명 증원

IV

향 후 계 획

- '26. 3. : 정관 개정 인가요청(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→ 서울시)
- '26. 3. : 정관 개정 인가(서울시)
- '26. 3. : 정관 개정 공포

※ 참고 : 정관 개정 절차



붙임1 : 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붙임2 : 정관 개정(안) 공포문 1부

[붙임1] 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6조(사업의 범위)</p> <p>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토지의 취득, 개발, 비축,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및 관리</p> <p>2.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, 개량, 공급(분양 또는 임대) 및 관리</p> <p>3.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, 개량,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</p>	<p>제6조(사업의 범위)</p> <p>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토지의 취득·개발·비축·<u>공급(분양 또는 임대)·운영</u> 및 관리</p> <p>2. <u>토지 및 도시의 개발·정비·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</u></p> <p><u>가. 주택건설용지, 산업시설용지, 공공시설용지 등의 개발사업</u></p> <p><u>나. 도시개발사업, 도시계획시설사업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, 재정비촉진사업</u></p> <p><u>다. 역세권 개발사업 및 부동산 개발업</u></p> <p><u>라. 빈집정비사업, 소규모주택정비사업</u></p> <p><u>마. 도시재생사업, 상권활성화사업, 시장정비사업</u></p> <p><u>바. 주거·산업·교육·연구·문화·관광·휴양·행정·정보통신·복지·물류 등(이하 이 목에서 "주거등"이라 한다)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·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</u></p> <p>3. 주택(복지시설을 포함한다) 및 건축물의 건설 등에 관한</p>	<p>○ 조례 제21조 개정 반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사 사명 변경('25.7.11.)에 따라 사업 범위를 재정비하여 변화하는 환경 및 수요에 적극 대응 - 기존 열거 형식에서 사업유형에 따라 세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통해 신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

현행	개정	비고
<p><u>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, 개량, 공급 및 관리</u></p> <p>4. 「<u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</u>」에 따른 정비사업</p> <p>5. 「<u>도시개발법</u>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</p> <p>6. 「<u>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</p> <p>7. 「<u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산업단지</p>	<p><u>다음 각 목의 사업</u></p> <p>가. <u>주택 및 건축물의 건설·개량·매입·비축·공급(분양 또는 임대)·운영 및 관리</u></p> <p>나. <u>주민 재정착 및 창업지원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·개량·매입·공급(분양 또는 임대)·운영 및 관리</u></p> <p>다. <u>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</u></p> <p>4. <u>주거복지사업</u></p> <p>5. <u>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</u></p> <p>가. <u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사업</u></p> <p>나. <u>주차장의 설치·운영 및 관리</u></p> <p>다. <u>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·운영 및 관리</u></p> <p>라. <u>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</u></p> <p>마. <u>관광사업의 개발·조성·운영 및 관리</u></p> <p>바. <u>도심항공교통(UAM)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</u></p> <p>사. <u>방송통신시설 설치·운영 및 관리</u></p> <p>6. <u>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</u></p> <p>7. <u>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</u></p>	

현행	개정	비고
<p>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</p> <p>8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</p> <p>9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</p> <p>10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</p> <p>11.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</p> <p>12. 주거복지사업</p> <p>13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, 운영 및 관리</p> <p>14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</p> <p>15.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</p> <p>16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</p> <p>17.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 건설사업</p> <p>18.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</p> <p>19.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(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)</p> <p>20.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</p>	<p>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</p> <p>9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(설계·감리 등) 및 업무(조사·연구·시험·기술개발 등)</p> <p><삭 제></p>	

현행	개정	비고
<p><u>운영사업</u></p> <p>21. 「<u>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</u>」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</p> <p>22. <u>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·관리사업</u></p> <p>23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</p> <p>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<u>시장의 승인</u>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 <u>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</u>을 받아 ----- -----.</p> <p><u>③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</u></p>	<p>○ 조례 제21조 개정 반영 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4조 제2항 반영</p>
<p>제22조 (조직 및 정원)</p> <p>① 공사에 사장, 감사, 7본부를 두며, 기구표는 <u>별표1</u>과 같다.</p> <p>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정원은 <u>별표2</u>와 같다. 단, 일시적 사업 확대 또는 공사의 관리·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하여 별표2의 정원과 별도로 정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2조 (조직 및 정원)</p> <p>① 공사에 사장, 감사, 7본부를 두며, 기구표는 <u>별표1</u>과 같다.</p> <p><u>※ 별표1 개정 ⇒ 별첨</u></p> <p>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의 정원은 <u>별표2</u>와 같다. 단, 일시적 사업 확대 또는 공사의 관리·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인력에 대하여 별표2의 정원과 별도로 정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p> <p><u>※ 별표2 개정 ⇒ 별첨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직제개편을 위한 조직 및 정원 관련 규정 개정 (별표1, 2)</p>

현행	개정	비고
<p>제 24조(의결사항)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 1. ~ 20. (생략)</p> <p><신설> 21.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 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 24조(의결사항)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 1. ~ 20. (현행과 같음) 21.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 22.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 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</p>	<p>○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임원의 문책 관련 사항 추가</p> <p>※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3조의6(징계 요구 등) 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.</p>
<p>제 28조(의결방법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 만,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 28조(의결방법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 만,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임 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은 임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하되, 세부 사항은 「임원인사규정」에서 규정하도록 근거 마련</p> <p>※ 「임원인사규정」 제21조(문책등의 절차) ④ 제3항의 의결방법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 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의견이 나뉘어 출석이사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 에는 출석이사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문책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레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이된 의견 으로 본다.</p>
<p>제29조(의사록 작성) 이사회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</p>	<p>제29조(의사록 작성) 이사회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/p>	<p>○ 상법 내 조문 준용</p> <p>※ 「상법」 제391조의3(이사의 의사록)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 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.</p>
<p>제33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의 결산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. 1. ~ 3. (생략)</p>	<p>제33조(손익금의 처리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조례 제30조 개정 반영 - 「서울특별시 주택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(25.9.29. 제정) 제 5조 제2호에 의거, 공사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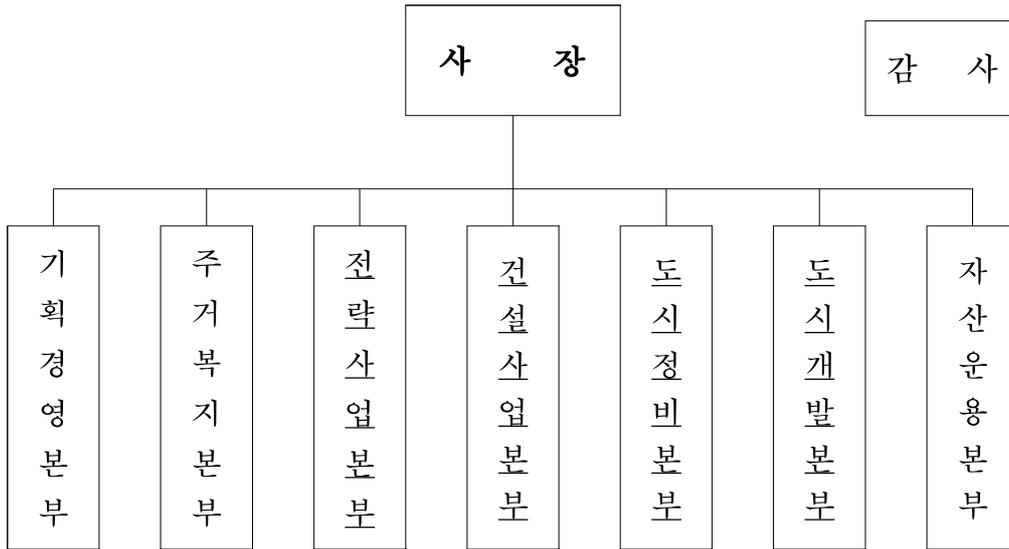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	비 고
<p>4. 이익배당(시 일반회계에 납입)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4. 「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주택진흥기금에 납입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결산이익금 중 일부를 '주택진흥기금'에 납입</p> <p>※ 「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2.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0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이익배당금</p>
<p><신설></p>	<p>부칙(2026.00.00.)</p> <p>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

【별표1 (제22조 제1항 관련)】 기구표

〈현행〉

기 구 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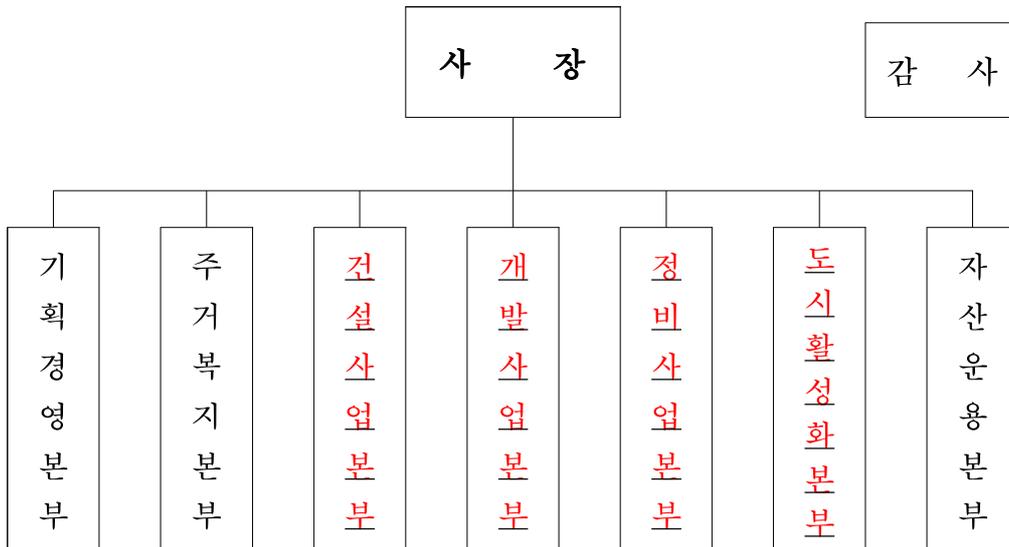
(사장, 감사, 7본부)



〈개정〉

기 구 표

(사장, 감사, 7본부)



【별표2 (제22조 제2항 관련)] 정원표

<현행>

정 원 표

총정원	임 원	직 원						
		계	사무직 · 기술직				주 거 복지직	전문직
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		
1,386	5	1,381	902	20	69	813	421	58

<개정>

정 원 표

총정원	임 원	직 원						
		계	사무직 · 기술직				주 거 복지직	전문직
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		
1,402	5	1,397	915	20	69	826	424	58

[붙임2] 정관 개정(안) 공포문

◎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제00호
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
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사업의 범위)

-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1. 토지의 취득·개발·비축·공급(분양 또는 임대)·운영 및 관리
 2. 토지 및 도시의 개발·정비·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주택건설용지, 산업시설용지, 공공시설용지 등의 개발사업
 - 나. 도시개발사업, 도시계획시설사업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, 재정비촉진사업
 - 다. 역세권 개발사업 및 부동산 개발업
 - 라. 빈집정비사업, 소규모주택정비사업
 - 마. 도시재생사업, 상권활성화사업, 시장정비사업
 - 바. 주거·산업·교육·연구·문화·관광·휴양·행정·정보통신·복지·물류 등(이하 이 목에서 "주거등"이라 한다)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·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
 3. 주택(복리시설을 포함한다) 및 건축물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주택 및 건축물의 건설·개량·매입·비축·공급(분양 또는 임대)·운영 및 관리
 - 나. 주민 재정착 및 창업지원 등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·개량·매입·공급(분양 또는 임대)·운영 및 관리
 - 다.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4. 주거복지사업
 5.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
 - 가.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
 - 나. 주차장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- 다.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·운영 및 관리
 - 라. 체육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- 마. 관광사업의 개발·조성·운영 및 관리
- 바. 도심항공교통(UAM)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
- 사. 방송통신시설 설치·운영 및 관리

- 6.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
- 7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
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
- 9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(설계·감리 등) 및 업무(조사·연구·시험·기술개발 등)

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및 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.

③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24조 제21호를 ‘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’으로 신설하고, 현행 제21호를 제22호로 한다.

제28조 제1항 중 ‘의결한다’를 ‘의결하되,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은 임원인 사유정으로 정한다’로 한다.

제29조 제목 외 부분 중 ‘의장 및 출석한 이사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’를 ‘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’로 한다.

제33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「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주택진흥기금에 납입

제22조 제1항 관련 ‘별표1’을 별첨 ‘별표1’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관련 ‘별표2’를 별첨 ‘별표2’와 같이 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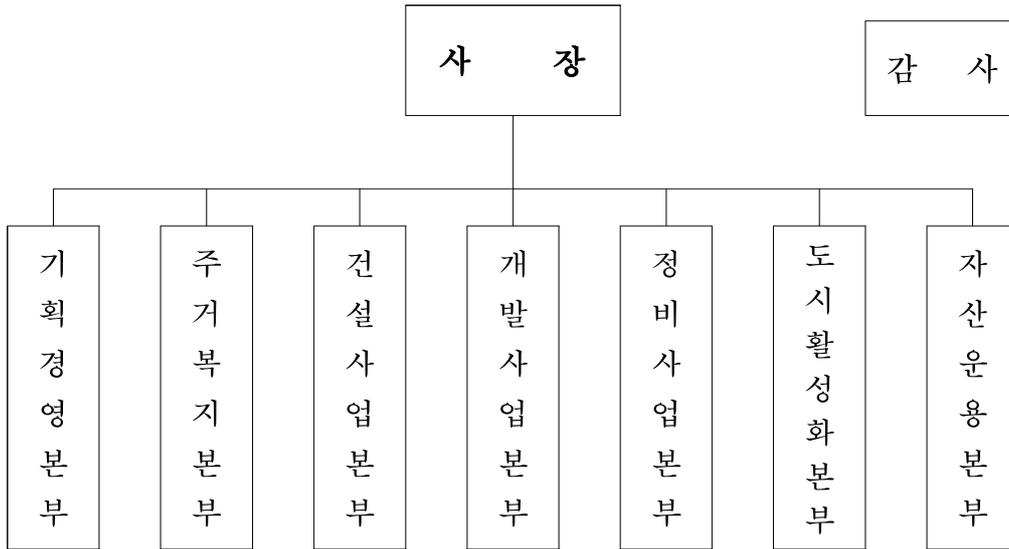
부 칙(2026.00.00.)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1 (제22조 제1항 관련)] 기구표

기 구 표

(사장, 감사, 7본부)



【별표2 (제22조 제2항 관련)] 정원표

정 원 표

총정원	임원	직원						
		계	사무직·기술직				주거 복지직	전문직
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		
1,402	5	1,397	915	20	69	826	424	58